



원산지관리사 핵심요약집 개정·정오사항 안내

(초판 1쇄. 2025.02.15)

※ 공통사항 ※

■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

- 기획재정부 → 재정경제부
- 기획재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차관 → 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차관
- 기획재정부령 → 재정경제부령
- 산업통상자원부(장관) → 산업통상부(장관)
- 통계청(장) → 국가데이터처(장)

제1과목. FTA협정 및 법령

교재 페이지	기존사항	개정사항
		호주측 기관발급처 추가
P. 26 호주 측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	호주상공회의소 ·호주산업협회 ·International Export Certification Services ·Trade Window Origin Pty Limited	호주상공회의소 ·호주산업협회 ·International Export Certification Services ·Trade Window Origin Pty Limited · WiseTech Global Pty Ltd

교재 페이지	기존사항	개정사항
		협정상 표현과 FTA특례법상 표현 병기
P. 27 필리핀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(정오)	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12개월	협정: 발급일 또는 작성일부터 12개월 FTA특례법: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1년 (공통규정)

제2과목. 원산지결정기준

교재 페이지	기존사항	
P. 207 원산지결정기준 부가가치비율 계산 공식 (BD법, MC법 수정)	BD(공제법)	$RVC = \frac{\text{상품가격} - \text{원산지재료비}}{\text{상품가격}} \times 100$
	MC법	$RVC = \frac{\text{비원산지재료비}}{\text{순원가}} \times 100$
	정오사항	
	BD(공제법)	$RVC = \frac{\text{상품가격} - \text{비원산지재료비}}{\text{상품가격}} \times 100$
	MC법	$MC = \frac{\text{비원산지재료비}}{\text{공장도가격(EXW)}} \times 100$

교재 페이지	기존사항	정오사항
P. 208 원산지결정기준 협정별 부가가치기준 비교표 (캐나다 수정)	캐나다 협정 부가가치 : RVC	캐나다 협정 부가가치 : MC

제4과목. 수출입통관

교재 페이지	기존사항	개정사항
		타 법률 개정에 따른 근로자의 날 명칭 변경
P. 243 2.(2) 기한의 계산(연장)	① 토요일 및 일요일 ② 「공휴일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③ 「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근로자의 날 (이하생략)	① 토요일 및 일요일 ② 「공휴일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③ 「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」에 따른 노동절 (이하생략)
교재 페이지	기존사항	개정사항
		연장규정 및 유효기간 범위 확대
P. 254 특관자간 거래물품의 과세가격사전심사 유효기간	3년	3년 *특관자간 거래물품의 과세가격 사전심사의 경우 결정통보일로부터 <u>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말일</u> (사업연도 말일 도래 30일전에 2년 연장 신청시 <u>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말일</u>)
교재 페이지	기존사항	개정사항
		기준금리 및 시장금리 변동에 따른 이자율 변경
P.262 1. 보정이자 이자율 개정	보정이자 연 1천분의 35 (부정 → 가산세)	보정이자 연 1천분의 31 (부정 → 가산세)

교재 페이지	기존사항	개정사항
	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(10%) 감면 신설</p>
<p>P. 263 (2)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</p>	<p>①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 과세가격 사전심사 결과 통보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② 감면대상 및 감면율 잘못 적용으로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</p>	<p>①-② (기존 동일) ③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의 통지를 받은 경우로서 해당 사전심사 신청 물품 및 그와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가목에 따른 기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통지된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나목에 따른 기간에 수정신고하는 경우</p> <p>가. 사전심사 신청일부터 사전심사 결과 통지일 전날까지 나. 사전심사 결과 통지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</p>

교재 페이지	기존사항	개정사항
	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기준금리 및 시장금리 변동에 따른 이자율 변경</p>
<p>P.267 2. 관세환급금 환급</p>	<p>① 과다납부·착오납부·이중납부에 대한 환급 ② 지체없이 결정, 30일 이내 환급 ③ 환급가산금 지급 (연 1천분의 35), 국가·지자체 수입 등은 제외</p>	<p>① 과다납부·착오납부·이중납부에 대한 환급 ② 지체없이 결정, 30일 이내 환급 ③ 환급가산금 지급(연 1천분의 31), 국가·지자체 수입 등은 제외</p>

교재 페이지	기존사항	개정사항
		<p>P. 275 2. 탁송품 특별 통관</p>